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윤석호 소유물건(2024타경34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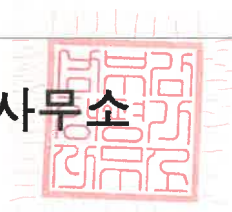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서번호: 1024-061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부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송지훈



| | | | | | | |
|----------------------------|-------------------------------|-------------|------------|-------------|--------------|-------------|
| 감정평가액 | 이억구천구백오십칠만원정 (₩299,570,000.-) | | | | | |
| 의뢰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 제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3계 |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윤석호 (2024타경34933) | | 감정평가 조건 |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 기타 참고사항 | - | | 2024.06.28 | 2024.06.28 | 2024.07.01 |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토지 | 2,675 | 토지 | 2,675 | - | 151,810,000 |
| | (제시외 건물) | (230.6) | 제시외 건물 | (230.6) | - | 147,760,000 |
| | | 이 | 하 | 여 | 백 | |
| 합계 | | | | | ₩299,570,000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 | | |
| " 별 지 참 조 " | | | | | |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단 가 | 금 액 | |
| 1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 86 | 대 | 계획관리지역 | 810 | 810 | 76,000 | 61,560,000 | 경매에서 미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금액 ₩43,092,000 |
| 2 | " | 84 | 답 | 보전관리지역 | 479 | 479 | 38,000 | 18,202,000 | |
| 3 | " | 83 | 대 | 계획관리지역 | 510 | 510 | 76,000 | 38,760,000 | 경매에서 미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금액 ₩34,884,000 |
| 4 | " | 85 | 답 | 보전관리지역 | 876 | 876 | 38,000 | 33,288,000 | |
| (제시외 건물) | | | | | | | | | |
| ㄱ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 86 위 지상 | 주택 | 블럭조 경사슬라브지붕 | (130) | 130 | 700,000 | 91,000,000 | 1,400,000 x 20/40 관찰감가 |
| ㄴ | " | 86 위 지상 | 주거기타 | 목조기타지붕 | (88.6) | 88.6 | 600,000 | 53,160,000 | 1,200,000 x 20/40 관찰감가 |
| ㄷ | " | 83 위 지상 | 정자 | 목조싱글지붕 | (12) | 12 | 300,000 | 3,600,000 | 600,000 x 20/40 관찰감가 |
| 합 계 | | | | | | | | ₩299,570,000.-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완료일인 2024년 06월 28일임.

4. 실질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의 실질조사는 2024년 06월 28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시조사 시 공부상 면적, 이용상황과 현황의 일치여부 및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평가에 인용 또는 참고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부 지번에 ** 처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ㄱ~ㄷ) 제시외건물은 개략적인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였고, 경매대상에 포함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 제시외건물(ㄱ,ㄴ,ㄷ)이 경매에서 제외되어 해당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액은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표기하였음.
- 본건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기호3)토지상으로 도시한 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제외 하였음.
- 본건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지적도면을 기준으로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지적 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 작업이 요구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규정

(1)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주요 내용 |
|-----------------------|--|
| 제7조 |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 가능함. |
| 제11조 |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함. |
| 제12조 |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
| 제14조 |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

(2) 세부 감정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세부 내용 |
|---------|--|
| 공시지가기준법 |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 (1)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개별로 감정평가 함.
- (2) 토지의 경우 「동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되, 「동 규칙」 제12조에 의해 다른 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대상 물건의 개요

(1) 토지

| 일련 번호 | 소재지 (하동군) | 지목 | 면적 (㎡) | 용도 지역 | 이용 상황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개별공시지가 (원/㎡) | 비고 |
|----------|---------------|----|-----------|----------|----------|----------|-----------|-----------------|----|
| 1 | 옥종면 월항리 86 | 대 | 810.0 | 계획 관리 | 단독 주택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36,900 | |
| 2 | 옥종면 월항리 84 | 답 | 479.0 | 보전 관리 | 농경지 | 맹지 | 부정형 평지 | 13,100 | |
| 3 | 옥종면 월항리 83 | 대 | 510.0 | 계획 관리 | 주거 나지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35,700 | |
| 4 | 옥종면 월항리 85 | 답 | 876.0 | 보전 관리 | 농경지 | 맹지 | 부정형 평지 | 14,3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4.01.01.]

| 기호 | 소재지 (하동군) | 면적 (m ²) | 지목 | 용도 지역 | 공시지가 (원/m ²) | 이용 상황 | 도로 접면 | 형상 지세 | 비고 |
|----|--------------------|-------------------------|----|----------|-----------------------------|----------|----------|-----------|-------------|
| A | 옥종면 월항리 87 | 932.0 | 대 | 계획 관리 | 36,900 | 단독주택 | 세로(가) | 부정형 평지 | |
| B | 옥종면 월항리 14-2 | 3,015.0 | 답 | 보전 관리 | 21,900 | 답 | 세각(가) | 가장형 평지 | 하천구역 27% |

※ 비교표준지의 공법상 제한 상태는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하였고, 그 공법상 제한 상태가 미미할 경우 고려하지 않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1) 자가변동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자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자가변동률을 적용함.

| 용도지역 | 자가변동률(%) | 비 고 |
|------|----------|---|
| 보전관리 | 0.119 | 경상남도 하동군 (24.01.01~24.06.28) (보전관리) 2024.01.01 ~ 2024.05.31 : 0.096 2024.05.01 ~ 2024.05.31 : 0.025 $(1 + 0.00096) * (1 + 0.00025 * 28/31)$ ≈ 1.00119 |
| 계획관리 | 0.218 | 경상남도 하동군 (24.01.01~24.06.28) (계획관리) 2024.01.01 ~ 2024.05.31 : 0.171 2024.05.01 ~ 2024.05.31 : 0.052 $(1 + 0.00171) * (1 + 0.00052 * 28/31)$ ≈ 1.00218 |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자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자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시점수정치 결정에 관한 의견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에 대한 전국 평균치로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국지적인 자가변동을 제대로 반영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자가변동 상황은 생산자물가지수보다 자가변동률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자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 지역요인 비교치 |
|--|----------|
|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조건 | 접근도로의 상태 |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
| | 농로의 상태 | 농로의 폭, 포장 등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의성 |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
| | |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
| | | 출하지와의 접근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 | 토양, 토질의 양부 |
| | | 일조, 통풍 등 |
| | 관개, 배수 | 관개의 양부 |
| | | 배수의 양부 |
| | 재해의 위험성 | 수해의 위험성 |
| | |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 | 면적 |
| | | 형상 |
| | 고저 등 | 고저 (경사지 등) |
| | | 경사의 방향 |
| | 경작의 장애 |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 토지이용상황 | 토지이용상황 등 |
| | 토양오염 |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규제의 정도 |
|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주택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조건 | 가로의 구조 및 상태 | 폭, 보도 |
| | | 포장 |
| | |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조건 |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
| | 교통의 접근성 |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
| |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 | 일조, 통풍 등 |
| | | 조망, 경관 등 |
| | | 지반, 지질 등 |
|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 | 면적 |
| | | 접면 너비 및 깊이 |
| | | 형상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
| | | 고저 (경사지 등) |
| | 접면도로 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
| 토지이용상황 | 토지이용상황 등 | |
| 토양오염 |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 |
| |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 본건 기호 | 표준지 기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격차율 | 의견 |
|----------|-----------|----------|----------|----------|----------|-----------|----------|-------|--|
| 1 | A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등함. |
| 2 | B | 0.90 | 0.90 | 1.00 | 1.00 | 1.12 | 1.00 | 0.907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열세, 행정조건(표준지 하천저축 등)에서 우세함. |
| 3 | A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0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등함. |
| 4 | B | 0.90 | 0.90 | 1.00 | 1.00 | 1.12 | 1.00 | 0.907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열세, 행정조건(표준지 하천저축 등)에서 우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 (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 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호 | 소재지 (하동군) | 지목 | 용도지역 | 단가 (원/㎡) | 기준시점 (거래시점) | 사업명 및 목적 |
|----|-------------------|----|------|-------------|----------------|----------|
| 1 | 옥종면 월횡리 11* | 답 | 보전관리 | 37,000 | 2024-06-13 | 경매 |
| 2 | 옥종면 월횡리 25* | 대 | 계획관리 | 69,888 | 2021-01-31 | 실거래 |
| 3 | 옥종면 월횡리 29* | 대 | 계획관리 | 60,606 | 2020-09-24 | 실거래 |
| 4 | 옥종면 월횡리 23* | 전 | 보전관리 | 37,209 | 2020-05-11 | 실거래 |

※ 공법상 제한 상태는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하였고, 그 공법상 제한 상태가 미미할 경우 고려하지 않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가격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 본건 토지와 제반 가격형성상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를 기준으로 한표준지의 시산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점수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음.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 A

| 구분 | 기호 | 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2) | 지역 요인*3) | 개별 요인*4) | 산출단가 (원/㎡) | 격차율 |
|------------|------|-------------|----------|-------------|-------------|-------------|---------------|-------|
| 비교사례 기준*1) | 비교사례 | 69,888 | 1.00 | 1.03673 | 1.00 | 1.050 | 76,078 | 2.057 |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㉔ | | | | | | | |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A | 36,900 | - | 1.00218 | - | - | 36,980 | |

| | | | | | | | | |
|---------|---|----------------------------|------------|----------|------------|----------|-------------|--|
| *1)선정사유 |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사례㉔>을 선정함. | | | | | | | |
| *2)시점수정 | 하동군 | 계획관리 | 2021-01-31 | ~ | 2024-06-28 | | 1.03673 | |
| *3)지역요인 |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 | | | | | | |
| *4)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요인 비교치 | |
| | 1.0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50 | |
| 의견 | 가로조건 | 가로조건(가로의 구조 및 상태 등)에서 우세함. | | | | | | |
| | 접근조건 | 대등함. | | | | | | |
| | 환경조건 | 대등함. | | | | | | |
| | 획지조건 | 대등함. | | | | | | |
| | 행정적조건 | 대등함. | | | | | | |
| 기타조건 | 대등함.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표준지 B

| 구분 | 기호 | 단가 (원/㎡) | 시점 수정*2) | 지역 요인*3) | 개별 요인*4) | 산출단가 (원/㎡) | 격차율 |
|--------------------------|-----------|-------------|-------------|-------------|-------------|---------------|-------|
| 비교사례 기준*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비교사례 ① | 37,000 | 1.00013 | 1.00 | 1.126 | 41,667 | 1.900 |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B | 21,900 | 1.00119 | - | - | 21,926 | |

| | | | | | | | |
|---------|---|--------------------------|------------|----------|------------|----------|-------------|
| *1)선정사유 |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이 같거나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사례①>을 선정함. | | | | | | |
| *2)시점수정 | 하동군 | 보전관리 | 2024-06-13 | ~ | 2024-06-28 | | 1.00013 |
| *3)지역요인 |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 | | | | | |
| *4)개별요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개별요인 비교치 |
| | 1.15 | 1.10 | 1.00 | 1.00 | 0.89 | 1.00 | 1.126 |
| 의견 | 가로조건 | 가로조건(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 | | | | |
| | 접근조건 | 접근조건(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우세함. | | | | | |
| | 환경조건 | 대등함. | | | | | |
| | 획지조건 | 대등함. | | | | | |
| | 행정적조건 | 행정적조건(하천 저축 등)에서 열세함. | | | | | |
| | 기타조건 | 대등함. | | | | | |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및 적정성 검토

가) 실거래가 분석 등을 통한 검증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의 가격수준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와의 지역·개별적인 특성의 비교,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인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거래가 분석을 통한 검증결과 상기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격차율은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비교사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격차율, 인근 거래사례의 거래단가 수준 및 호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비교표준지 기호 | 산정 보정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
| A | 2.057 | 2.05 |
| B | 1.900 | 1.9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주된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

| 일련 번호 | 표준지공시지가 | | 시점 수정 | 지역 요인 | 개별 요인 | 그 밖의 요인 | 단가(원/㎡) | |
|----------|---------|--------|----------|----------|----------|------------|---------|--------|
| | 기호 | 원/㎡ | | | | | 산정 | 결정 |
| 1 | A | 36,900 | 1.00218 | 1.00 | 1.000 | 2.05 | 75,810 | 76,000 |
| 2 | B | 21,900 | 1.00119 | 1.00 | 0.907 | 1.90 | 37,785 | 38,000 |
| 3 | A | 36,900 | 1.00218 | 1.00 | 1.000 | 2.05 | 75,810 | 76,000 |
| 4 | B | 21,900 | 1.00119 | 1.00 | 0.907 | 1.90 | 37,785 | 38,000 |

7.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거래사례 3, 4」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 기호 | 소재지 (하동군) | 지목 | 용도 지역 | 토지단가 (원/㎡) | 기준시점 (거래시점) | 평가목적 | 비고 |
|----|----------------|----|----------|---------------|----------------|------|----|
| 3 | 옥종면 월항리 29* | 대 | 계획관리 | 60,606 | 2020-09-24 | 실거래 | |
| 4 | 옥종면 월항리 23* | 전 | 보전관리 | 37,209 | 2020-05-11 | 실거래 | |

(2) 사정보정

선정된 거래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1.00)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거래사례 기호 | 용도지역 | 기간 | 지가변동률 | 비고 |
|------------|------|-------------------------|---------|----|
| 3 | 계획관리 | 2020.09.24.~2024.06.28. | 1.03981 | |
| 4 | 보전관리 | 2020.05.11.~2024.06.28. | 1.03176 | |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지역요인 비교

|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 지역요인 비교치 |
|------------------------------------|----------|
| 본건은 거래사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 1.000 |

(5) 개별요인 비교

▣ 농경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조건 | 접근도로의 상태 |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
| | 농로의 상태 | 농로의 폭, 포장 등 |
| 접근조건 | 교통의 편의성 |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
| | |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
| | | 출하지와의 접근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 | 토양, 토질의 양부 |
| | | 일조, 통풍 등 |
| | 관개, 배수 | 관개의 양부 |
| | | 배수의 양부 |
| | 재해의 위험성 | 수해의 위험성 |
| 기타 재해의 위험성 | |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 | 면적 |
| | | 형상 |
| | 고저 등 | 고저 (경사지 등) |
| | | 경사의 방향 |
| | 경작의 장애 |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
| | 토지이용상황 | 토지이용상황 등 |
| 토양오염 |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 규제의 정도 |
|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주택지대

| 조건 | 항목 | 세항목 |
|-------------|------------------------|-------------------------------------|
| 가로조건 | 가로의 구조 및 상태 | 폭, 보도 |
| | | 포장 |
| | | 계통 및 연속성 |
| 접근조건 |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
| | 교통의 접근성 |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
| |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
| 환경조건 | 자연환경 | 일조, 통풍 등 |
| | | 조망, 경관 등 |
| | | 지반, 지질 등 |
| | 인근환경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
| | |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
| |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
| 위험 및 혐오시설 등 |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 |
| |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 |
| 획지조건 | 규모, 형상 등 | 면적 |
| | | 접면 너비 및 깊이 |
| | | 형상 |
| | 방위, 고저 등 | 방위 |
| | | 고저 (경사지 등) |
| | 접면도로 상태 |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
| | 토지이용상황 | 토지이용상황 등 |
| 토양오염 |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 |
| 행정적조건 | 행정상의 규제정도 | 용도지역, 지구, 구역 |
| | |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
| 기타조건 | 기타 | 장래의 동향 |
| | |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

| 본건 기호 | 사례 기호 | 가로 조건 | 접근 조건 | 환경 조건 | 획지 조건 | 행정적 조건 | 기타 조건 | 격차율 | 의견 |
|----------|----------|----------|----------|----------|----------|-----------|----------|-------|--|
| 1 | 3 | 1.05 | 1.00 | 1.00 | 1.05 | 1.00 | 1.00 | 1.103 |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
| 2 | 4 | 0.92 | 1.05 | 1.00 | 1.00 | 1.00 | 1.00 | 0.966 |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가로조건(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
| 3 | 3 | 1.05 | 1.00 | 1.00 | 1.05 | 1.00 | 1.00 | 1.103 |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
| 4 | 4 | 0.92 | 1.05 | 1.00 | 1.00 | 1.00 | 1.00 | 0.966 | 본건은 비교사례 대비 가로조건(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

| 일련 번호 | 거래사례 단가 |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단가(원/㎡) | |
|----------|---------|--------|------|---------|------|-------|---------|--------|
| | 기호 | 원/㎡ | | | | | 산정 | 결정 |
| 1 | 3 | 60,606 | 1.00 | 1.03981 | 1.00 | 1.103 | 69,510 | 70,000 |
| 2 | 4 | 37,209 | 1.00 | 1.03176 | 1.00 | 0.966 | 37,085 | 37,000 |
| 3 | 3 | 60,606 | 1.00 | 1.03981 | 1.00 | 1.103 | 69,510 | 70,000 |
| 4 | 4 | 37,209 | 1.00 | 1.03176 | 1.00 | 0.966 | 37,085 | 37,000 |

8. 시산가액 조정 관련사항

(1)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일련번호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원/㎡)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원/㎡) | 결정단가 (원/㎡) |
|------|------------------------------|------------------------------|---------------|
| 1 | 76,000 | 70,000 | 76,000 |
| 2 | 38,000 | 37,000 | 38,000 |
| 3 | 76,000 | 70,000 | 76,000 |
| 4 | 38,000 | 37,000 | 3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 구 분 | 감 정 평 가 액 (원) | 비 고 |
|--------|--------------------|-----------------------|
| 토지 | 151,810,000 | 상세내역은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 제시외 건물 | 147,760,000 | " |
| 합 계 | 299,570,000 | - |

2. 결정의견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토지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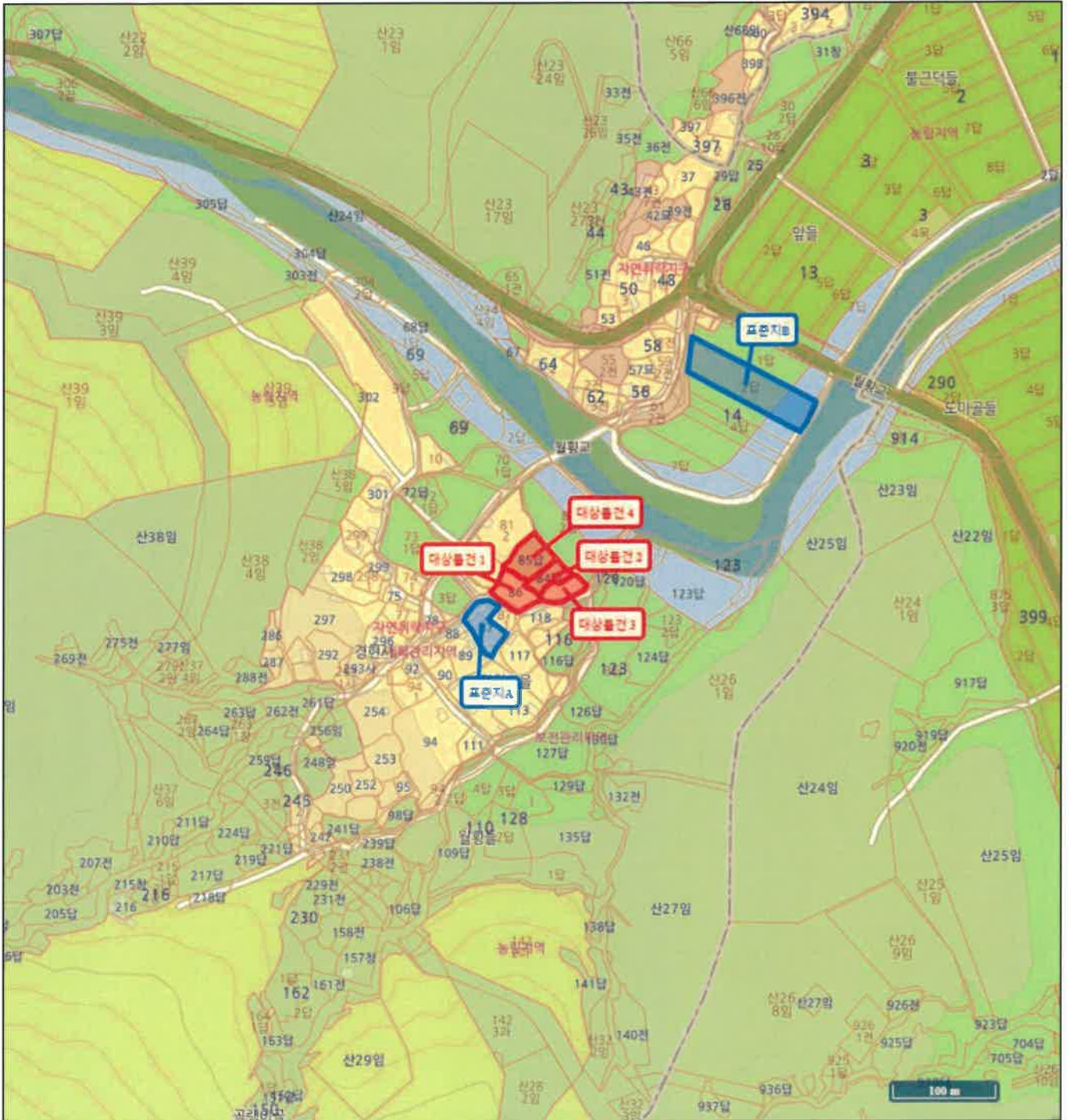
1.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월항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대지임. 기호2)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임. 기호4)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2) : 맹지이나 기호1),3)을 통하여 진입가능함. 기호3) :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 : 맹지이나 기호1),3)을 통하여 진입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 제시목록외의 물건 | - 구조 :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 ㉠,㉡,㉢이 소재함. - 영향 : ㉠,㉡,㉢의 경우 구조·규모·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감정 물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공부와의 차이 | - |
|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 - |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흥리 86외



건물개황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86외



제시외건물

- ㉠ 블록조 경사슬라브지붕(주택) : $13 \times 10.8 - 6 \times 0.6 - 1.8 \times 3.2 - 0.8 \times 1.3 \approx 130\text{m}^2$
- ㉡ 목조기타지붕(주거기타) : $10 \times 10.6 - 2 \times 6 - 0.6 \times 2.2 - 0.6 \times 3.5 - 1.5 \times 1.3 \approx 88.6\text{m}^2$
- ㉢ 목조싱글지붕(정자) : $3 \times 4 \approx 12\text{m}^2$

사 진 용 지



본건 기호1) 토지



본건 기호2)4) 토지

사 진 용 지



본건 기호3)토지



본건 기호3)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ㄱ



제시외 건물 ㄴ

사 진 용 지



제시외 건물 ㄷ



제시외 건물 ㄱ, ㄴ